
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9항 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,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대상)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,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(이하 “교통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
 2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
 3.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관운전을 하려는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

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3조(교육장소) 교통안전교육은 「교통안전법」 제56조에 따른 교통 안전체험에 관한 연구·교육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계획의 공고)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교육 실시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교통안전교육의 일시·장소·방법·과목
2. 교통안전교육의 신청 요건·절차·구비서류
3. 교통안전교육의 수료 요건
4.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5조(교육신청 등) ①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한 자는 교육 입교 시에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실시 방법) ①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.

② 교통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, 교육시간은 40시간으로

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.

제7조(교육의 이수기준 등) ①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,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.
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,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 서식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(제6조 관련)

교육명	교육과목	교육시간
1. 이론교육	소양교육	8시간
	가.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	6시간
	나. 제동신습 및 제동거리	2시간
2. 실기교육	나. 비교점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	2시간
	라.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	2시간
	마. 도로유형별 안전운행	6시간
	바. 위험예측 훈련	4시간
3. 종합평가	필기시험, 기능시험, 주행시험	8시간
4. 기타	입소식, 수료식 등	2시간
총계		40시간

비고

1. 이론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송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,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실기교육은 실내 실습 또는 실외의 체험교육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.
3.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의 효율적·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.

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서식]

교통안전교육 신청서

* 뒤쪽의 작성방법은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주식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운전면허증 번호	종류	
교육장소			

「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구비서류

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교육 입교 시 제출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